

2019년도 제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3. 7.(목요일)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0건(안건번호 제2019-1390호~1420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클라우드 내 불법복제물로의 링크 게시물 1개 안건(제2019-1392호)은 심의일 현재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이 중단되어 있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 청구된 계정 1,077건(안건번호 제2019-4호~1080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23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2개 안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견 없으며,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 이견 없음
- A 위원 : 이견 없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390호~1420

호로 모두 50건임

안전번호 제2019-1390호~1391호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최신 드라마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심의대상 게시물을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복수의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으로 최신 인기 드라마(1화~20화)를 판매하고 있음

- A 위원 : 복수의 웹하드 사이트 계정에 대해 동일인인지 여부를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과 해당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민원인은 □□□ 이용자(닉네임확인불가, 민원인이 특정한 게시물 확인 닉네임: △△)와 ○○○○ 이용자(닉네임: ▽▽)가 올린 게시물 제목과 드라마 설명, 파일 용량 등 그 내용이 항상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두 이용자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참고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드라마는 제휴저작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1390호~1391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과 링크로 연결되는 파일을 보여주면서) 안전번호 제2019-1392호는 일반인이 신고한 것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내 최신 게임 프로그램 파일로 연결되는 링크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참고로 해당 블로그는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게임 프로그램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설정 게시물 약 342개를 제공하고 있고,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현재 배너광고 3건이 실려 있음

(보호원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보호원은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총2개)를 클릭하면 불법복제물로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고 링크 수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Winx' 웹 페이지를 경유하여 CAPTCHA를 통과하여 'Google Drive'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됨을 확인하였음

다만 심의 시점 현재 게시물로 설정된 링크(총2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A 위원 : 게시자가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Winx' 단축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난 제2018-213회 심의에서 일부 심의위원께서 그와 같은 생각을 말씀한 바 있음
- A 위원 : 현재 보호원에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용하는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을 통해 웹하드

등 온라인 사이트를 자동 모니터링 하고 있음

- C 위원 :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링크를 제공하는 'Winx' 서비스가 종료되어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B 위원 : 게시자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블로그는 게임 불법복제물 제공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게시자는 배너광고 게재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불법복제물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역시 자발적 삭제가 아닌 'Winx' 서비스가 종료되어 접속 불가능한 것이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C 위원 :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이견은 없고, 현재 불법복제물로 링크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해야 한다고 판단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2는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게시물인데,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가 불법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확함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서 '정보'는 확정적이지 아니한 개념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심의시점을 기준으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가 유효해서 실제

로 불법복제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그러한 링크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하지만 본 건 게시물의 경우 현재 시점에 링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A 위원 : 백대용 위원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게시물의 링크 자체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경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1392호는 클라우드 내 불법복제물로의 링크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심의시점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링크를 제공하는 'Winx' 서비스가 종료되어 접속이 불가능하므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권고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과 해당 웹하드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안전번호 제2019-1393~1420호는 모두 단순 불법복제물들임
특히 안전번호 제2019-1396~1414호는 개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 영화 저작물로, 웹하드 사이트의 이러한 불법복제물들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B 위원 : 단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93~1420호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하기로 함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90호~1391호, 제2019-1393호~1420호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심의일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링크를 제공하는 제2019-1392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심의일 현재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이 중단되어 있어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기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4호~1080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23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2개 안전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3. 11.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